SUMMIT
PRUGIO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 입주자 모집공고

- ■ 본 아파트는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1.25임(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함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과천시 1년이상 (2017.01.25이전) 거주한 신청자가 과천시 1년미만(2017.01.26. 이후)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과천시 1년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경기도 과천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1순위 기타 청약일에 청약접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됨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 본 아파트는 청약 과열지역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prugio.theuber.co.kr/house/2017/gwacheonpark-prugiosummit)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이 추가 되었음
    -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전역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 · 부산 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 – 공공택지 / 부산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전역
    -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 (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016. 11. 15 규칙개정시 기반영)
-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위반에 따른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해 재당첨 제한(2017.10.18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경기도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과밀억제권역이며,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됨(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 경기도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 ■ 2009.04.0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 2017.11.24.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 도시정책과 – 684호 (2018. 01. 25)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3층, 지상32층 15개동 총1,317세대(조합원공급 742세대(보류지 3세대 포함), 일반공급 575세대)중 아파트 일반공급 575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5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4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1.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가능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특별 공급	일반 공급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018000030–01	59.92A	59A	59.92	25.88	85.80	46.70	132.50	40.69	53	116	169	3
	2018000030–02	59.87T	59T	59.87	26.07	85.94	46.67	132.61	40.76	26	56	82	3
	2018000030–03	84.99A	84A	84.99	29.41	114.40	66.25	180.65	54.26	68	150	218	13
	2018000030–04	84.98B	84B	84.98	29.25	114.23	66.24	180.47	54.18	2	11	13	3
	2018000030–05	84.94C	84C	84.94	30.79	115.73	66.21	181.94	54.89	15	36	51	1
	2018000030–06	84.99T	84T	84.99	30.57	115.56	66.25	181.81	54.81	9	27	36	–
	2018000030–07	101.93A	101A	101.93	29.12	131.05	79.45	210.50	62.15	–	3	3	–
	2018000030–08	101.93T	101T	101.93	29.68	131.61	79.45	211.06	62.42	–	2	2	–
	2018000030–09	114.92	114	114.92	30.41	145.33	89.58	234.91	68.92	–	1	1	–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타입	동호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5%)	2회(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시	계약후30일이내	'18.08.01	'18.12.01	'19.04.01	'19.08.01	'19.12.01	'20.04.01	입주 지정일
							1차계약금	2차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6차중도금	30%
59A	▪701동 3호,4호 ▪704동 1호,2호 ▪709동 1호,2호 ▪712동 3호,4호 ▪713동 3호,4호 ▪714동 1호,2호	1층	3	328,520,000	435,480,000	764,000,000	38,200,000	38,2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229,200,000
		2층	10	337,120,000	446,880,000	784,000,000	39,200,000	39,2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235,200,000
		3층	12	345,720,000	458,280,000	804,000,000	40,200,000	40,2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241,200,000
		4층	11	354,750,000	470,250,000	825,000,000	41,250,000	41,25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247,500,000
		5층이상	133	363,350,000	481,650,000	845,000,000	42,250,000	42,25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253,500,000
59T	▪701동 1호,2호 ▪702동 3호,4호 ▪703동 1호,2호	1층	3	319,920,000	424,080,000	744,000,000	37,200,000	37,2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223,200,000
		2층	4	328,950,000	436,050,000	765,000,000	38,250,000	38,25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3층	6	337,550,000	447,450,000	785,000,000	39,250,000	39,25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235,500,000
		4층	6	346,580,000	459,420,000	806,000,000	40,300,000	40,3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241,800,000
		5층이상	63	355,180,000	470,820,000	826,000,000	41,300,000	41,3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82,600,000	247,800,000
84A	▪702동 1호,2호,5호,6호 ▪703동 3호,4호 ▪705동 1호,2호,3호,4호 ▪706동 3호,4호 ▪707동 1호,2호,3호,4호 ▪708동 3호,4호 ▪709동 3호 ▪710동 3호 ▪712동 1호 ▪713동 1호 ▪714동 3호 ▪715동 1호,2호,3호	1층	13	419,250,000	555,750,000	975,000,000	48,750,000	48,75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292,500,000
		2층	26	430,860,000	571,140,000	1,002,000,000	50,100,000	50,100,000	100,200,000	100,200,000	100,200,000	100,200,000	100,200,000	100,200,000	300,600,000
		3층	24	442,470,000	586,530,000	1,029,000,000	51,450,000	51,450,000	102,900,000	102,900,000	102,900,000	102,900,000	102,900,000	102,900,000	308,700,000
		4층	22	454,080,000	601,920,000	1,056,000,000	52,800,000	52,800,000	105,600,000	105,600,000	105,600,000	105,600,000	105,600,000	105,600,000	316,800,000
		5층이상	133	465,690,000	617,310,000	1,083,000,000	54,150,000	54,15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324,900,000
84B	▪709동 5호 ▪710동 5호 ▪714동 5호 ▪715동 5호	1층	3	418,390,000	554,610,000	973,000,000	48,650,000	48,650,000	97,300,000	97,300,000	97,300,000	97,300,000	97,300,000	97,300,000	291,900,000
		2층	4	430,000,000	570,000,000	1,0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300,000,000
		3층	2	442,040,000	585,960,000	1,028,000,000	51,400,000	51,400,000	102,800,000	102,800,000	102,800,000	102,800,000	102,800,000	102,800,000	308,400,000
		4층	3	453,650,000	601,350,000	1,055,000,000	52,750,000	52,750,000	105,500,000	105,500,000	105,500,000	105,500,000	105,500,000	105,500,000	316,500,000
		5층이상	1	465,260,000	616,740,000	1,082,000,000	54,100,000	54,1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324,600,000
84C	▪709동 4호 ▪710동 4호 ▪714동 4호 ▪715동 4호	1층	1	423,980,000	562,020,000	986,000,000	49,300,000	49,3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295,800,000
		2층	4	436,020,000	577,980,000	1,014,000,000	50,700,000	50,700,000	101,400,000	101,400,000	101,400,000	101,400,000	101,400,000	101,400,000	304,200,000
		3층	4	447,630,000	593,370,000	1,041,000,000	52,050,000	52,05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104,100,000	312,300,000
		4층	4	459,240,000	608,760,000	1,068,000,000	53,400,000	53,4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320,400,000
		5층이상	38	471,280,000	624,720,000	1,096,000,000	54,800,000	54,8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328,800,000
84T	▪712동 2호 ▪713동 2호	2층	2	423,550,000	561,450,000	985,000,000	49,250,000	49,250,000	98,500,000	98,500,000	98,500,000	98,500,000	98,500,000	98,500,000	295,500,000
		3층	2	435,160,000	576,840,000	1,012,000,000	50,600,000	50,6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101,200,000	303,600,000
		4층	2	447,200,000	592,800,000	1,040,000,000	52,000,000	52,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312,000,000
		5층이상	30	458,810,000	608,190,000	1,067,000,000	53,350,000	53,350,000	106,700,000	106,700,000	106,700,000	106,700,000	106,700,000	106,700,000	320,100,000
101A	▪706동 1호 ▪710동 1호	2층	2	451,070,000	597,930,000	1,049,000,000	52,450,000	52,45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104,900,000	314,700,000
		5층이상	1	491,060,000	650,940,000	1,142,000,000	57,100,000	57,100,000	114,200,000	114,200,000	114,200,000	114,200,000	114,200,000	114,200,000	342,600,000
101T	▪711동 3호	2층	1	439,460,000	582,540,000	1,022,000,000	51,100,000	51,100,000	102,200,000	102,200,000	102,200,000	102,200,000	102,200,000	102,200,000	306,600,000
		3층	1	452,790,000	600,210,000	1,053,000,000	52,650,000	52,650,000	105,300,000	105,300,000	105,300,000	105,300,000	105,300,000	105,300,000	315,900,000
114	▪708동 1호	5층이상	1	532,770,000	706,230,000	1,239,000,000	61,950,000	61,950,000	123,900,000	123,900,000	123,900,000	123,900,000	123,900,000	123,900,000	371,70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세대수 공급금액은 동호수별로 상이하니 정확한 세대별 공급금액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함
※ 면적합산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방식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2	59.87	84.99	84.98	84.94	84.99	101.93	101.93	114.92
약식표기	59A	59T	84A	84B	84C	84T	101A	101T	11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3. 공통 유의 사항

-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쿡탑등)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선택 품목은 추후 공지예정이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라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업무는 시공사가 대행함
- • 최하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하실 수 없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1.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T	84A	84B	84C	84T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한군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대상자 등		16	8	21	1	5	3	5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8	4	10	–	2	1	25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8	4	10	–	2	1	25
신혼부부 특별공급		16	8	21	1	5	3	54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5	2	6	–	1	1	15
합 계		53	26	68	2	15	9	173

※ 주택형 101A, 101T, 114의 경우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세대당 1회 한정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격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함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제40조에 의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의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의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바람(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명이상의 자녀를 둔자 일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할 때 해당 최하층을 우선 배정됨. 최하층 우선배정시 다자녀가구와 고령자 또는 장애인세대가 경쟁이 발생할경우 고령자 또는 장애인세대에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일반 / 다자녀가구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3.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 분	59A	59T	84A	84B	84C	84T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등,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장기복무군인등,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체육유공자)	16	8	21	1	5	3	5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 : 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시 · 도관공서 : 보건복지과(의사상자), 시 · 도 장애인복지과(장애인), 국군복지단(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하나원(북한이탈주민) 통일부(납북피해자) 여성가족부(일본군위안부피해자) 대한체육회(우수선수) 사단법인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우수기능인) 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유공자)등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당첨자)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 · 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10년장기복무군인 등 (10년장기복무군인, 군인연금)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0조 : 전체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구 분		59A	59T	84A	84B	84C	84T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8	4	10	–	2	1	25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8	4	10	–	2	1	25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거주지역에 따라 "배점기준표"의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함) • 경기도에 배정된 세대에서 경쟁이 발생될 경우 경기도 낙첨자는 나머지 기타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에 포함하여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임신중에 있는 태아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13.)]"에 따름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1조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구 분	59A	59T	84A	84B	84C	84T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16	8	21	1	5	3	54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구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원이하	5,630,275원이하	5,630,275원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이하	6,756,330원이하	6,756,330원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 · 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 지역(과천시) 1년이상 거주자 (해당 주택건설 지역(과천시) 1년미만 거주자의 경우 수도권지역으로 봄)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3)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포함)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시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도 포함

6.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6조 : 전체 건설량의 3% 이내 공급

구 분	59A	59T	84A	84B	84C	84T	계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5	2	6	–	1	1	15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 1년이상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해당 주택건설 지역(과천시) 1년미만 거주자의 경우 수도권지역으로 봄)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 (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13.)]"에 따름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단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지역 거주자로 봄. 단, 본 공동주택은 청약과열지역 분양주택으로 청약 1순위 신청시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여만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2.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추첨제 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과천시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85㎡ 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50% /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과천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비 고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치금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 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100%	0%
전용면적 85㎡초과	50%	50%

-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에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함
-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 청 자 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①과 ②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 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전용면적 60㎡이하 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년 9월 1일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제4절 특별공급제 외)시 적용함
부양가족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 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Ⅳ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청약전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
- •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1. 특별공급 청약 신청 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청약신청 접수일	청약신청방법	청약접수시 유의사항
특별 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과천시 및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018.01.30.(화) /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하여 청약 신청접수 • 장소 :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 3층)	•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특별공급 신청일에 지정시간내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등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한 추천명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 별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만18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신청자) 인감(서명)날인된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사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2. 일반공급 청약 신청 일정 및 방법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전 반드시 과천시 전입일 확인 요망(입주자모집공고일 1년이상 확인 요망)
– 본 아파트는 1순위 당해지역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천시 1년미만 거주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청약신청 접수일	청약신청방법	청약접수시 유의사항
일반 공급	1순위(당해)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	2018.01.31.(수) / 08:00~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kr)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당해지역(과천시)" 거주자는 "당해지역(과천)" 접수일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 청약불가(위반시 부적격처리) – "당해지역(과천)"에 전입제한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역(과천)" 거주자라 하더라도 전입제한일이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위반시 부적격처리)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의 효력상실
	1순위(기타)	과천시 1년 미만 및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거주자	2018.02.01.(목) / 08:00~17:30		
	2순위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018.02.02.(금) / 08:00~17:30		

※ 견본주택 내에서는 청약접수가 불가함 ※ 가점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적용안내,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장기복무 중인 군인 청약 1순위 신청자중 과천지역 1년이상(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신청시(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기타지역으로(수도권 거주자) 신청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위반시 부적격처리)

■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 1순위/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등 입력 ⇒ 청약완료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아파트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은 17:30분까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의 전입일 기재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 노약자, 장애인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 /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Ⅴ 당첨자 발표

1.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일시 : 2018.01.30.(화) / 17:00 장소 :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 3층)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추첨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시 : 2018.02.08.(목) 장소 : 금융결제원 청약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및 당사 홈페이지(http://prugio.theuber.co.kr/house/2017 /gwacheonpark-prugiosummit)
일반공급	1순위	일시 : 2018.02.08.(목) / 장소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함
※ 당첨자는 당첨 동 · 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며, 부적격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2. 당첨자 선정 방법(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추첨일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지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거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 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는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사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발표는 지연될 수도 있음
일반공급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과천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 1년이상 거주신청자가 과천시 1년미만,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과천시 1년미만,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음 – 1순위 신청시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공급(가점제 청약접수자 미달시 추첨제 청약접수자가 입주자로 선정됨) – 1순위 신청시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2순위 신청시 100%를 추첨제로 공급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3.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선 정 방 법
예비 입주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prugio.theuber.co.kr/house/2017 /gwacheonpark-prugiosummit)에 공개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유의 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이후 2일 이내에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변동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통보를 못 받아서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에 참여 못하여도, 이에 대해서 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예비입주자는 동 · 호수 배정 추첨 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4. 인터넷 당첨자 발표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자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자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청약 → 당첨사실조회 → 주택별조회
	이용대상	2018. 02. 08(목) ~ 2018. 02.17.(토) (10 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콜센터 ☎1599–9999(서비스코드: 9 → 1 → 3)	ARS 서비스제공 없음
	이용대상	2018. 02.08(목) ~ 2018.02.17.(토) (10 일간)	
휴대폰 모바일	이용방법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이용대상	2018.02.08(목)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Ⅵ 계약 체결

1.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	2018. 02 . 20(화) ~ 2018. 02 . 22.(목) (3 일간) 10:00 ~ 16:00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 3층)
일반공급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2.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서 류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		계약금	• 계약금 지정계좌에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택공급 신청서	•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표 초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거주기간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및 만18세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당첨 통보자	○		무주택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계약자)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포함)으로 간주함
	○		인감도장(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위임장(계약자)		
	○		신분증(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장(대리인)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3. 계약시 유의사항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 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 · 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분양대금연체, 계약부정행위등)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외국인(시민권자)은 계약전에 경기도 과천시에 토지 취득허가를 득한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 중도금 납부와 관련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분양가 총액 9억을 초과하는 주택형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자납하여야 함.
- • 경기도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4.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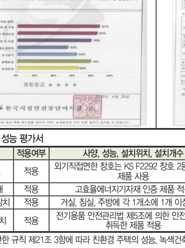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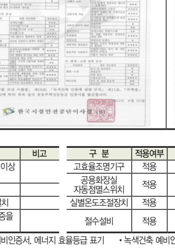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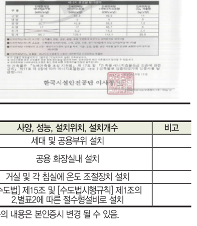

■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비고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창호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 적용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비고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 화장실내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에너지 효율등급 표기 •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내용은 본인증시 변경 될 수 있음.

7.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과천주공7단지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등록번호 : 134171 – 0008226)	주식회사 대우건설 (법인등록번호 : 110111 – 2137895)

■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대치동) 써밋갤러리 3층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써밋 / 분양안내 : 1877 – 5001
■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써밋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prugio.theuber.co.kr/house/2017/gwacheonpark-prugiosummit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 바랍니다.

1877.5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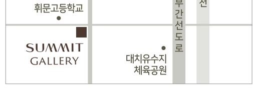시행 **과천주공7-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대우건설**